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완성검사를 받은”을 “제11조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한”으로, “이 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한다”를 “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법 제5조의 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자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 함께 실시할 것. 다만,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한다.
2.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판매자(제1호에 따른 판매자를 제외한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자 :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제3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

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권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37조제2항 중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를 “수입하려는 자”로 하
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기를 수입하
기 전에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중 “250킬로그램”을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검사권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
2.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로 의제되
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
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
검사의 시기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바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냉매를 사용하는 동일 용도(건축물의 냉·난방용
과 그 외의 것으로 구분한다)의 냉동설비

별표 4 제1호가목7)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
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
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①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
- ②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 ③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 ④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
- ⑤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과의 사이. 다만, 비가연
성·비독성의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의 경우는 경계책으로 대
신할 수 있으며,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
정한 경우, 1)가)에 규정된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 저장설비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경우, 한 사업소

안에 2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저장설비의
단독 저장능력이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 미만
인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0 제2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압력방출기능을 갖는 구조일 것

별표 30 제1호나목5)나) 중 “등이”를 “등에 장착되어”로, 같은 목5)다) 중
“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으로”를 “독성가스 제독작업, 인명 보호·구조,
스킨스쿠버 등의 용도로”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제○호, 2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2. 별표 4 제1호가목7)나)⑤·별표 10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2
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1호가목7)나)⑤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최초로 고압가스 제조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1호가목7)나)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고압가스 제조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행일 이후 변경을 한 경우(저장설비의 증설 또는 위치변경만 해당한다)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① 법 제11조제6항 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 부의 확인·평가는 <u>완성검사를 받은</u>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하고, 그 이 후에는 최초로 확인·평가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 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 11조제6항에 따른 확인·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하는 주기) 이 <u>지난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u> <u>한다.</u>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 ①----- ----- ----- <u>제11조에</u> <u>따른 사업개시 신고를 한</u> ----- ----- ----- ----- ----- ----- ----- ----- <u>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u> <u>라 실시한다.</u> <u>1. 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u>

제 조 자 · 저 장 자 · 판 매 자(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 가스 수입업자 및 별표 9 제2호에 따른 배관에 의한 고압가스 판매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를 할 때 함께 실시할 것. 다만,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협의하여 실시시기를 정한다.

2.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판매자(제1호에 따른 판매자를 제외한다)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자 : 매 5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정기검사)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단서 신설>

③ ~ ⑤ (생략)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 생략)

① (생략)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
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
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
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

제30조(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재난 그 밖
의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시
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검사권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
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

----- 수입하려는 자

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
1항제4호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
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
다.<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
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
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 다만, 영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
관장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용
기를 수입하기 전에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① -----

1. ----- 500킬로그램 -----

2.~ 6. (생 략)

② (생 략)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생 략)

②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로 의제되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시에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 설>

2.~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

<신 설>

③ ~ ⑥ (생 략)

[별표 3]

냉동능력 산정기준

1. (생 략)

2. 냉동설비가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

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검사권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시기

2.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로
의제되는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
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시설에 대한 법 제
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의
시기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3]

냉동능력 산정기준

1. (현행과 같음)

2. -----

정한 각각의 냉동능력을 합산한다. <단서 신설> 가. ~ 마. (생략) <신설>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1. 특정제조 가. 시설기준 1) ~ 6)(생략) 7)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생략)	----- ----- . 다만, 바목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동일 건축물에서 동일 냉매를 사용하는 동일 용도(건축물의 냉·난방용과 그 외의 것으로 구분한다)의 냉동설비 [별표 4] 고압가스 제조(특정제조·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 1. ---- 가. ---- 1) ~ 6)(현행과 같음) 7) ----- 가) (현행과 같음)
---	--

나)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및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고, 그 한 쪽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가 다른 쪽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① 압축기와 그 충전장소 사이

② 압축기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③ 충전장소와 그 가스충전용기 보관장소 사이

④ 충전장소와 그 충전용 주관밸브 조작밸브 사이

⑤ 저장설비와 사업소 안의 보호시설과의 사이. 다만, 비가연성·비독성의

다) ~ 바) (생략)

저온 또는 초저온가스의
경우는 경계책으로 대신
할 수 있으며, 방호벽의
설치로 인하여 조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가)에 규정된 안
전거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경우, 저장설비를
지하에 매몰하여 설치한
경우, 한 사업소 안에 2
개 이상의 저장설비가
있는 경우로서 그 저장
설비의 단독 저장능력이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
른 저장능력 미만인 경
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
지 않을 수 있다.

다) ~ 바) (현행과 같음)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1. 시설기준

2. 기술기준

가. ~ 카. (생략)

<신설>

[별표 30]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1. 용기에 의한 가스 운반등 기준

가. (생략)

나. 독성가스 외 용기 운반등 기준

1) ~ 4) (생략)

5) 운반기준 적용 제외

1)부터 4)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1), 2)가), 2)

나), 3), 4)가), 별표 9의2 제2호

[별표 10]

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과 용기의 재검사기준

1. ----

2. ----

가. ~ 카. (현행과 같음)

타.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접합용

기는 그 용기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압력방출기능을

갖는 구조일 것

[별표 30]

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1. -----

가. (현행과 같음)

나.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목1)가)①・⑤・⑦, 별표 9의2	-----
제2호가목1)나)②・④・⑤・⑥	-----
・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나) -----
구조차량 등이 긴급 시에	----- 등에 장착되어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 <u>스킨스쿠버 등 여가 목적</u>	다) <u>독성가스 제독작업, 인명</u>
<u>으로</u> 공기충전용기를 2개	<u>보호·구조, 스킨스쿠버</u>
이하로 운반하는 경우	<u>등의 용도로</u>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부 칙</u>
	<u>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u>
	<u>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u>
	<u>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u>
	<u>날부터 시행한다.</u>
	1. <u>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u>
	<u>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u>

부터 시행한다.

2. 별표 4 제1호가목7)나)⑤ ·

별표 10 제2호타목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기준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 제1호가목7)나)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로 고

압가스 제조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1호가목7)나)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고압가스 제

조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고

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행일 이후 변경을 한 경우(저

장설비의 증설 또는 위치변경만

해당한다)에도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u>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u> <u>후 6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u> <u>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u>
--	---

【별지 제28호서식】

용기 등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

신 청 인	상호	
	대표자 명칭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 소재지	
	사업의 종류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종류	
	수량	
	사유	
	반송기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에 한함)	☐ 1년 ☐ 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기 []냉동기 []특정설비에 대한 검사의 전부 생략 확인을 신청합니다.

일 일 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귀하
 검사기관의 장

첨부서류	1.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검사생략 소명자료 1부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에 한함) 3. 안전관리계획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기한이 1년 초과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금액
------	---	--

처리절차

```

graph LR
    A[신청] --> B[접수]
    B --> C[검토]
    C --> D[결재]
    D --> E[통보]
  
```

신청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기관